

# [2020-13] ○○○ 이의신청 요약 ('20. 12. 21. 결정)

## ■ 사실 관계

- 2000. 00. 종전 자동차(00가0000)를 취득하여 현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조 장애인 보철용·생업활동용 자동차로 자동차세를 감면 받고 있음
- 2000. 00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철용·생업활동용 쟁점 자동차(00나0000)를 대체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음
- 2000. 00. 처분청 지방세 비과세(감면) 결정 통지(감면의무 위반 추징 안내 사항 포함)
- 2000.0.00. 신청인 쟁점 자동차 취득·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 말소 또는 이전 등록 미이행의 사유로 면제한 취득세 부과·고지
- 2000.0.00. 신청인 이의신청 제기

## ■ 쟁점 사항

- 신청인이 장애인 보철용·생업활동용 쟁점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

## ■ 신청인 주장

- 신청인은 쟁점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하거나 말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세액이 추징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, 처분청에서는 취득세 비과세(감면)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인이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

## ■ 우리도 의견 : 기각

- 취득세는 신고·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관청의 신고·납부 등의 안내는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할 뿐, 신청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시 과세관청으로부터 감면 추징에 관한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,
- 신청인이 쟁점 자동차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조에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으로 감면을 받고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